

제주지방법원 2018. 10. 30 선고 2016가단593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변론 종결2018. 9. 18.

판결 선고2018. 10. 30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B, C, H, I, J, K, L은 각 18/17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는 6/17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E, F, G은 각 4/171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 '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서귀포시 M대 238m²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'고 주장하는바, 위 주장사실은, 피고 J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,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위 M 대 238m²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의 공유자로서 원고에게 각 보유 지분에 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, 그 대지인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성준규

별지